

I. 재가교도를 현장교화의 주역으로

-교화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장 도 영
(수위단회 전문위원)

목 차

1. 이끄는 말
2.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대전제
3. 검토한 관련 법규
4. 맺는 말

1. 이끄는 말

일찍이 대종사께서는 이 교문을 여시면서 원대한 포부와 경륜으로써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 하셨고 그동안 교단은 명실상부하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지상과제라고 할 수 있는 작금의 교화 현실은 여러 면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함에는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우선 주어진 주제에 국한하고자 한다.

2.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대전제

(1) 교법정신의 구현

국가나 단체가 지향하는 바를 이념이라 한다면 그 이념이 현실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규가 뒷받침이 되어야만이 명실상부하다 할 것이다. 현실을 무시한 법규는 사문화되기 쉬우며 법규를 무시한 현실은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교법

정신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규 또한 현실화되어야 한다.

(2) 시대변화의 인지

선후천의 교역기라서 그런지 미래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 변화의 속도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 시대의 특징이라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모든 면에서 인권신장이 괄목하여 권리 주장과 참여 의식이 증대되고 있으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시류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시대의 변화는 인심의 변화를 야기하고 그 인심의 변화는 바로 현실이며 법규 개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3) 역할분담의 한계

단체구성원들의 역할 분담이 적절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그 단체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본다.

오늘의 법규 개정 시도도 결국 역할 분담이 주안점이 될 것이다. 재가출가의 역할 분담도 적절해야 하지만 서로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한다.

(4) 교단의 재창립 의지 발현

교단의 존재이유인 현실교화가 심각한 국면에 있다고 한다. 교단 발전의 한 과정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사정이 단순하지만은 않는 것같다. 중지를 모아 이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 때에 교단을 재창립한다는 의지가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5) 현실적 문제의 극복

교단은 법치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신행단체는 법규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면도 있다. 초법적인 신앙심과 현실적 법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3. 검토한 관련 법규

- (1) 교현
- (3) 교당규정
- (5) 교화단규정

- (2) 교구규정
- (4) 교당규정 개정안(교화부)
- (6) 원무규정

- (7) 거진출진규정
 (8) 재가교역자인사임면규정
 (9) 교도법위사정규정
 (10) 교도사업성적사정규정
 (11) 원불교 훈련규정

(1) 교현

현 행 조 향	검 토 안
<p>제2장 교단과 교도 제16조(기본의무·권리) 1.조석심고의 의무 2.법회출석의 의무 3.보은헌공의 의무 4.입교연원의 의무 5.선거와 피선거의 권리 6.교정참여의 권리</p> <p>제2절 수위단회 제43조(구성) 수위단회는 종법사인 단장 및 원로수위단원과 남녀 각 9인의 <u>정수위단원으로</u> 구성한다.</p>	<p>(신설)교화 훈련의 의무</p> <p>(수정 및 신설) 수정: 정수위단원 → 출가수위단원 혹은 전무출신단</p> <p>신설: 재가수위단원 혹은 거진출진단</p>
검토 의견	<p>(제16조) 전 교도에게 교화 훈련 의지 각인 (제43조) 1. 대종사님 재세시의 경륜 2. 재가교도들의 수준, 역량 향상으로 교정 참정권 확대 바람직</p>

2. 교구 규정

현 행 조 향	검 토 안
<p>제3장 교구교의회 제15조(구성) 교구교의회는 교당의 주임교무, 기 관장, 교도회장과 교구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p>	(신설)특선재가위원
검토 의견	재가교도들의 역량 결집, 활동 계기 부여

3. 교당 규정

교화부 개정안	검 토 안
<p>제3장 임원</p> <p>제9조(직무)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교감교무는 교화·훈련·인사·재정업무 및 부속기관, 단체를 지도 감독하며 지역교화 협의회를 담당한다.</u> 2. <u>주임교무는 교감교무를 보좌, 교감교무 유고시 업무대행, 교화·훈련에 관한 업무 주관, 교화단 지도 업무, 일반법회 및 각종 의식에 관한 업무 주관, 인사·문서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u> 3. <u>보좌교무는 주임교무를 보좌, 주임교무 유고시 업무 대행, 청소년 교화·훈련 업무 및 회계 담당, 문서에 관한 업무를 지도한다.</u> 4. <u>부교무는 선임교무를 보좌, 유고시 업무를 대행, 학생·어린이 교화 훈련 및 출납, 문서 취급 업무를 담당한다.</u> 5. <u>회장은 일체 교산 주관, 예산 결산주관, 유지 운영 주관, 건물 및 도량 수호 주관, 섭외 및 교화를 담당한다.</u> 6. <u>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u> 7. <u>원무는 원무규정 제10조에 의거 교화사업에 협력한다.</u> 	<p>(수정)(직무)각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임원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직무 분담은 따로 정한다.</p> <p>[출가임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화 2. 훈련 3. 인사 4. 재정,회계,출납 업무 5. 문서 업무 6. 교화단 업무 7. 법회 및 의식 주관 8. 선임교무 보좌 9. 선임교무 유고시 업무 대행 10. 부속기관, 단체 지도 감독 11. 地區 담당 <p>[재가임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화 2. 교화단 관리 3. 교당개척 4. 의식보급 5. 섭외 6. 단원의 공부 사업 지도 7. 단장 보좌, 유고시 업무 대행 8. 회장 보좌, 유고시 업무 대행 9. 일체 교산에 관한 사항 10.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11.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12. 건물 및 도량 수호에 관한 사항 13. 서무
검토 의견	각 교당 실정에 맞는 직무 분담이 되도록

교화부 개정안	검 토 안
<p>8. 주무는 유지 운영 대책, 건물 도량 관리, 가산 도구 관리, 일 체 서무를 담당한다.</p> <p>9. 단장은 교무 보좌, 교화단 관리 및 단원의 공부 · 사업 지도, 일 체 교화 조력, 의식 보급, 교당 개척, 유지대책을 담당한다.</p> <p>10. 중앙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p> <p>11. 순교는 일체 교화 조력, 의식 보급, 교당개척을 담당한다.</p> <p>12. 임원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직 무 분담은 위 항에 준하여 따로 정한다.</p> <p><u>제11조(운영위원회)교당의 임원 중 교감(주임)교무가 회장단과의 협 의에 의하여 지명한 약간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의결 된 중요 사항은 교당교의회의 추 인을 얻어야 한다.</u></p> <p>제4장 교당교의회</p> <p>제13조(구성)교당교의회 의원은 당 해 <u>교당의 임원</u>으로 구성한다.</p>	<p>(수정)교당의 임원들로 임원회를 구성한 다. 다만 의결된 중요 사항은 교당 교의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p> <p>(수정)교당교의회는 교당의 출가 · 재가교 도로 구성한다. 다만 재가교도에 대 한 참정 자격은 적의히 정할 수 있 다.</p>
검토 의견	<p>(제11조)1.임원들의 주인 의식 고취 2.교당운영 뿐만 아니라 교당 교화에 관한 관심 유도 및 협의</p> <p>(제13조)1.전 교도에게 주인 의식 고취 2.교정 참여 권리 인정 3.교도 총의에 의한 교당 운영 체제 확립</p>

4. 교화단 규정

현 행 조 향	검 토 안
검토 의견	현행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면 재가 교도가 현장의 주역이 되고 현장 교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사료됨

5. 원무 규정

현 행 조 향	검 토 안
제2조(정의)원무란 거진출진으로서 원무의 자격을 인증받아 재가하면서 힘 미치는 대로 <u>교화사업에 협력</u> 하는 자를 말한다.	(수정)교화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검토 의견	1.교화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로 임하도록 2.“원무”의 활용 의지 부족, 홍보 부족

6. 거진출진 규정

현 행 조 향	검 토 안
검토 의견	“거진출진” 용어 사용의 극대화로 재가 교도의 자긍심 유도 필요

7. 재가교역자 인사 임면 규정

현 행 조 향	검 토 안
검토 의견	의견없음

8. 교도 법위 사정 규정

현 행 조 항	검 토 안
<p>제1장 총칙</p> <p>제5조(기간)①정식 법위 사정은 매3년 마다 실시한다.</p> <p>제2절 교구법위사정위원회</p> <p>제13조(구성)교구법위사정위원회는 교구장이 교구내 <u>교무</u> 중에서 최고법 위자를 중심으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p>	
검토 의견	<p>1.(제5조)잦은 법위 사정으로 타성화 우려. 실시 기간 조절 필요</p> <p>2.(제13조)교정 참정권 부여, 공정성 유지</p>

9. 교도 사업 성적 사정 규정

현 행 조 항	검 토 안
<p>제2장 사업성적 사정위원회</p> <p>제8조(교구 사업성적 사정위원회)①교구 사업성적 사정위원회는 교구장과 사무국장과 수반지 교당 교감교무로 구성한다.</p>	(신설)특선재가교도
검토 의견	<p>1. (제8조)교정 참정권 부여, 공정성 유지</p> <p>2. 적극적인 규정 실행 의지 필요</p> <p>3. 교단적 교육, 홍보 필요</p>

10. 원불교 훈련 규정

현 행 조 항	검 토 안
<p>제3장 의무</p> <p>제16조(신입자의 의무) 새로 입교 또는 출가한 교도는 기초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기초 훈련 과정은 별도로 정한다.</p> <p>제17조(책임자의 의무) 각 교당과 기관의 장은 소속 임원과 교도에게 해당된 훈련을 이수시킬 의무를 진다.</p>	의견없음
검토 의견	신입자와 책임자의 철저한 의무 이행만이 교화활성화의 지름길

4. 맷는 말

재가교도를 현장교화의 주역으로 만들자는 과제를 받고 교화 관련 법규를 검토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해 보았지만 현장교화를 크게 살려 내는 데에는 출가교도들의 사고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이란 구성원들의 의지가 결집된 최대공약수이기 때문에 교화 관련 법규의 개정이 진행된다면 출가교도의 사고 전환의 시험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화 관련 법규 중에서는 개정해야 할 조항도 있지만 현행안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조항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법 제정을 위해 중지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정된 법을 준수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성숙한 주인정신과 준법정신이 더욱더 절실하다고 보며, 평소에도 법 규 공부하기에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으로 본다.